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8
----------	-----

제출년월일 : 2005.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세법」(법률 제733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69호)이 개정되어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 및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하고, 자동차세감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종합토지세 관련문구 삭제 및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
 - "종합토지세" 관련문구 삭제 및 재산세로 수정(안 제11조의 1항 3호, 제15조 등)
 - "재산세.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통합(안 제2조, 제4조, 제7조 등)
- 나. "주거용건축물" 및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
(안 제4조, 제10조1항)
- 다. 기타 법률 명칭개정으로 인한 수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수정(안 제15조의2)
- 라.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신설
(안 제15조의3)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적용 부과
 - 이외의 자동차는 당해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 감면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나. 관계법령 : 별첨
-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라.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마.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4조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5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6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7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주거용건축물 및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를 각각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하고, "건축물 취득 후"는 각각 "주택 취득 후"로 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각각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는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각각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한다.

제15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5조의1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으로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5조의2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17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8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9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한다.

제20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1조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2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3조제1호 내지 제4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4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6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를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로 하고, 단서중 "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한다.

보칙제29조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보칙제32조의2 제목 및 본문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3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 하는 중상 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 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 촌안의 부동산에 대 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 및 도시계획세 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 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 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 지세</u>를 면제한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감면) ① ----- ----- ----- -----<u>재산세</u>----- ----- ----- -----<u>재산세</u>----- -----</p>
<p>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 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u>주거용 부동산</u>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 지세</u>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 -----<u>주택</u>----- -----<u>재산세</u>----- -----</p>
<p>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 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 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 -----<u>재산세</u>----- -----</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 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u>하고, <u>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100분의 50을 경감</u>한다.</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u>재산세의</u>-----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현행	개정안
<p>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p>1~2.(생략)</p> <p>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p>	<p>-----</p> <p>-----</p> <p>-----</p> <p>1.~2.(현행과 같음)</p> <p>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p> <p>-----</p> <p>-----제9조-----</p> <p>-----</p> <p>-----</p>
<p><신설></p>	<p>제15조의3(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p> <p>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p> <p>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관한 법률) ①-----</p> <p>-----</p> <p>-----</p> <p>-----</p> <p>-----</p> <p>-----</p> <p>-----</p> <p>-----재산세-----</p> <p>-----</p>

현행	개정안
<p>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생략)</p> <p>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 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 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p> <p>1. ----- ----- 재산세----- ----- ----- ----- 재산세----- ----- -----</p> <p>2. ----- ----- 재산세----- ----- ----- ----- 재----- 산세----- ----- -----</p> <p>3. ----- ----- 재산세----- ----- -----</p>

현행	개정안
<p>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u>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u> 다만, 1991년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p> <p>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u>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u>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u>주거용 건축물</u>의 부속토지에 한한다.</p>	<p>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①</p> <p>-----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p> <p>②-----</p> <p>-----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p> <p>-----주택-----</p>
<p>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레중 <u>종합토지세</u>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p>	<p>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u>토지에 대한 재산세</u>-----</p>
<p>제32조의2(<u>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u>) 이 조레중 <u>종합토지세</u>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p>	<p>제32조의2(<u>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u>)-----<u>토지에 대한 재산세의</u>-----</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8.12.31>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2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중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생략)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 시 지 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녹지지역	7배
	5.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 2(생략)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부동산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5.1.14 법률 733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9 (생략)

20. "착석기준점"이라 함은(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의 위치의 좌석을, 좌석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의 좌석을,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의 좌석을 말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체와 골반사이의 회전중심점 또는 제작자등이 정하는 이에 상당하는 표준설계위치를 말한다.

21. "골반충격부위"라 함은 착석기준점에서 위로 178밀리미터, 아래로 102밀리미터, 앞으로 204밀리미터, 뒤로 51밀리미터로 결정되는 지면과 수직인 직사각형을 좌우로 이동할 경우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22. 삭제 <1995.12.30>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